

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정
폐지규정」을

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인

2026년 9월 17일

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정 폐지규정

1. 제안이유

의원 신분증의 규격·제식 및 발급 등과 관련하여 기존 규정이 실무상 실효성을 상실하고 사문화됨에 따라, 신분증 발급·관리 기준의 명확성과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에 따른 의회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기존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정」의 폐지
- 나. 입법 공백 방지를 위한 시행일 규정(안 부칙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훈령 제40호

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정 폐지규정

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정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」의 시행일부터
발령한다.